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2014. 8. 7.)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주소 기재방법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자치행정과
(전화 : 901-6083, FAX : 901-6108, E-mail : seob125@gangbu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자치행정과